



국회의원 **홍 희 덕**

보도자료

담당 보좌관 이호연
010-5196-6333

날짜 2011년 7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6호
전화 02)784-6183 / 전송 02)788-3326

홈페이지 www.okhong.net / 대표메일 okhong@assembly.go.kr

<고용노동부의 거짓 해명자료 반박>

홍희덕의원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왜곡?

고용부, 거짓말 반복할 시간에

OECD의 한국 최저임금 통계 되돌려놔야

고용부, “통계청의 유급휴가 와 유급주휴는 다르다.”

통계청, 유급주휴제도 포함되어있어. 원조사표에는 ‘유급휴일.휴가’ 명시

-홍희덕 의원, “고용노동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채, OECD 통계를 왜곡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1. 지난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경향닷컴(7.7), 파이낸셜뉴스(7.7), 아이뉴스(7.7) “최저임금 순위 통계 조작됐다”, “고용노동부, OECD 최저임금 수준 통계조작”, “통계조작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수준 왜곡” 등 기사와 관련하여 해명자료를 냈지만, 오히려 해명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해명자료 내용은 홍희덕 의원실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 “시간제 근로자의 5.2%만이 유급주휴제도를 받고 있다.”가 허구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해명자료의 핵심내용>

- 통계청 자료에서 시간제근로자의 수혜비율이 5.2%인 것은 “유급주휴제도”가 아니라 “유급휴가” 통계임

< 근로복지 수혜자 비율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10. 3				2011. 3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중감	상여금	중감	시간외수당	중감	유급휴가	중감
<임금근로자>	63.4	65.0	44.7	58.7	65.2	1.8	65.4	0.4	44.4	-0.3	57.2	-1.5
○ 정 규 직	76.6	79.4	55.5	70.9	77.9	1.3	79.8	0.4	54.6	-0.9	69.6	-1.3
○ 비정규직	36.8	36.0	23.0	34.0	40.2	3.4	37.3	1.3	24.3	1.3	33.0	-1.0
- 한 시 적	56.7	52.9	34.0	53.4	61.5	4.8	55.1	2.2	35.1	1.1	51.2	-2.2
.기 간 제	62.3	57.0	36.8	60.7	66.3	4.0	57.6	0.6	36.2	-0.6	55.8	-4.9
.비기간제	40.3	41.1	25.9	31.8	48.5	8.2	48.3	7.2	32.0	6.1	38.6	6.8
- 시 간 제	6.1	11.6	5.7	6.1	8.5	2.4	11.2	-0.4	6.2	0.5	5.2	-0.9
- 비 전 형	25.3	23.0	14.1	19.8	26.7	1.4	23.6	0.6	15.4	1.3	18.9	-0.9

- “유급휴가”는 “유급주휴”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시간급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기준의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

* 유급주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는 휴일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통계를 조작하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순위를 조작한 바 없음

- 오히려 홍희덕의원실에서 통계청의 “유급휴가” 통계를 “유급주휴” 통계인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왜곡하고 있다고 할 것임

2.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홍희덕 의원실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경제활동 인구 부가 조사) 중 <유급휴가>는 고용노동부가 이야기 하는 ‘유급휴가(연차)’와 ‘유급주휴(유급휴일)’가 모두 포함 된 것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5.2%만이 유급주휴제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분기별로 진행하는 고용형태별 부가 조사의 원조사표에는 유급휴가에 관하여 <유급휴일.유급휴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도자료 작성 시 편의를 위해 ‘유급휴가’라고 표현한 것이다. 실제, ‘유급주휴’와 관련된 시행령 변경 때문에 해당조사의 2003년 부가조사부터 <유급휴일.유급휴가>항목이 포함되었다.

53 지난 주의 직장에서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퇴직금	→ 11. 예 12. 아니오
■ 상여금(명절비, 휴가비, 선물 등 포함)	→ 21. 예 22. 아니오
■ 시간외 수당	→ 31. 예 32. 아니오
■ 유급휴일·휴가(연월차, 유급출산휴가 등)	→ 41. 예 42. 아니오

또한 노동법에서는 유급휴가를 넓은 의미로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좁은 의미로는 ‘연차’로 사용한다.

즉,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한국의 최저임금 근로자(시간급 근로자)들이 유급주휴제도(유급휴일)을 5.2% 수준 밖에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OECD에 구걸하여, 한국의 월 최저임금에 유급주휴제도(유급휴일)을 포함시켜 2009년 기준 월 70만4천원에서 90만4천원으로 2010년 기준 월 72만3360원에서 92만8860원으로 인상시킨 것이 다시 한 번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3.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부처의 과실이 사실로 드러나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궁색한 변명을 한 것이다.

이에 홍희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해명자료를 냈다.”며 사실이 아닌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청하였고, “물의를 일으킨 담당자에 대한 징계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OECD에 구걸을 하여 통계 왜곡을 한 것이 다시 한번 사실로 드러난 만큼, OECD의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첨부1. 7월 7일 홍희덕의원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임 OECD 통계 조작”

첨부2. 7월 8일 고용노동부 해명자료

첨부3. 통계청, <2011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첨부4.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 조사표